

[일반공급 가점제 / 추첨제]

고객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 저희 「대봉서한이다음」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,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(주택의 공급계약)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당첨자 서류검수 안내를 드리오니 기간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 제출기간

- 기간 : 2021. 12. 10(금) ~ 12. 17(금) 10:00 ~ 17:00
- 장소 : 침산동 서한모델하우스 (북구 침산동 156-18번지 / ☎ 322-4700)

■ 제출서류 [공통 서류(필수) 외의 서류는 해당자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]

구분	해당서류	발급기준	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공통 서류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계약용 1통 ※ 반드시 본인 발급분으로 제출, (대리발급분은 불가함)
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주민등록표등본 (상세)	본인/ 분리배우자	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(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배우자 등본 추가 제출)
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본인/ 직계존속	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·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가족관계 증명서 (상세)	본인	세대주 또는 세대원 사실 등을 증명
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/ 세대원전원	직계 존·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※ 발급 기간은 생년월일 ~ 모집공고일(11. 12) 까지 발급.
해당자	주민등록표초본 (상세)	직계존속	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
		직계비속	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
	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	본인/ 직계비속	-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-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 전원의 혼인여부 확인 (미혼 확인)
	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	직계존속	- 부양중인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(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시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 등본 첨부)
		배우자	- 배우자의 직계존속 확인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
	복무확인서	장기복무군인	군 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통,
	건축물등기부 등본	1주택 처분 각서자	추첨제 당첨자 중 1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의 경우 (해당주택 등기부등본)
제3자 대리 계약시		당첨자 인감증명 1통, 인감도장, 대리인 신분증 ※ 본인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외 대리 신청 및 계약 불가	

■ 유의사항

- 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및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된 원본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.
- ※ 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시 반드시 “세대주 성명 및 관계”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※ 입주대상자의 자격검증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 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